
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(안 제 2조제1항).
-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5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